시 민

문서번호	도로관리과-5668
결재일자	2021. 4. 6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

주무관	도로안전시설팀장	도로관리과장	안전총괄관	안전총괄실장
이병석	*신준식*	*하현석*	*박종수*	*04/06* *한제현*
협 조	*도로시설과장*			*임대운*

I·SEOUL·U

공동주택 소음방지 시설 협의 기준 검토 보고

2021. 4.

안 전 총 괄 실

【도로관리과】

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*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–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■	□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–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–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, 젠더 자문관 등	■	□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–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	■	□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–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–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–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–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–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■	□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–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■	□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■	□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–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– (성평등) 성별고정관념·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	□	■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□	
	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■	□	

공동주택 소음방지 시설 협의 기준 검토 보고

재건축·재개발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시 저소음포장을 방음시설로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.

Ⅰ 추진배경

○ ********** 등 공동주택 사업 추진시 방음시설로 저소음 포장을 채택하는 경우가 계속 됨

○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개정고시(안) 평가 항목에 저소음포장이 포함되어 사업시행자는 저소음포장이 방음벽 대체 시설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발생

Ⅱ 추진현황

○ '19. 6월 저소음포장 방음시설 적용여부 논의

○ '19. 6.18 : 환경부 질의(소음·방지 시설여부, 답변없음)

- 저소음포장의 방음시설 적용여부 논의('19. 6월)

○ '21. 2. 1 : 시의원 면담(상계2구역 저소음포장 설치가능 여부)

- **********
- ******** 방음시설 저소음포장 채택
- **********(법령상 위배 됨을 설명)

○ '21. 2. 3 : 환경부 질의 2차(소음방지 시설여부, 답변없음)

○ '21. 2.18 : 시 환경영향평가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공고 201-399호)

○ '21. 3.10 : 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저소음포장 제외요청

(시 도로관리과 → 시 환경정책과)

※ 현 황

▸ 현재 협의 중(4건)

. ********** /

****

▸ 최근(2019~2021) 협의(6건)

. ********** /

****

⇨ 향후 저소음포장 관련 협의 증가 예상('20년 환경영향평가 접수 22건/시 환경정책과)

Ⅲ 현안문제

○ 저소음포장은 방음시설이(소음진동관리법)아니고 영구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방음시설로 볼 수 없음

-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소음방지시설 등)별표2

○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개정(안) 평가 항목에 저소음포장이 포함되어 사업시행자는 방음벽 대체 가능한 것으로 법령 확대 해석

○ 경제적 이익, 건축계획 용이성 이유 방음시설로 저소음포장 채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협의 기준이 미정립되어 사업별 협의 기준 다름

○ 도로사업소는 유지관리 측면만 고려하고 환경적(소음저감대책)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협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함.

○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 의무지만 공공도로라는 이유로 서울시로 전가(대응 필요)

○ 현실적으로 저소음포장의 방음효과 유지 불가능

- 3년이면 굴착복구가 가능하여 매번 저소음포장 고수 할 수 없음

○ 타·시도(16개) 환경영향평가 사례조사 결과 저소음포장 적용사례 없음

Ⅳ 대 책

○ **협의기준 마련**

- 공동주택 건설 협의시 소음저감대책을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저소음포장을 방음시설로 채택시 소음·진동관리법에 위배됨을 통보(인허가 기관)
- 환경영향평가 진행 초기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여 저소음포장이 방음시설로 채택되지 않도록 의견 제시(환경부, 시 환경정책과)

○ **협의부서 일원화**

- **(당초)** 각 도로사업소 개별 협의 ⇨ **(변경)** 서울시 도로관리과 총괄 협의

○ **시 환경영향평가 항목(저소음포장) 제외추진(시 환경정책과)**

- 『저소음포장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·제시』 평가 항목에서 제외

○ **『공동주택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』 제정 추진 검토**(붙임2 참조)

- 민간 방음시설 공공도로 설치(유지관리 의무 전가)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

※ 선행사례 : 광주광역시 『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』

▸ 제정사유 : 기부채납 방음시설(방음터널 등)유지관리비 부과근거 마련(시 재정부담 완화)
▸ 시 행 일 : 2018.3.1. / 적용대상 : **방음벽, 방음터널**(저소음포장 제외)
▸ 비용부담 : 유지관리비용(일시납부 : 기간 60년)

Ⅴ 행정사항

○ **저소음포장 관련 인·허가 기관에 협의 기준 통보**

- 재개발 등 추진 기관에 방음시설이 아닌 점 등을 인·허가시 반영

○ **공공부지상 민간 소음·방지시설 설치 요구 대비 조례 제정 추진**

- 유지관리 비용 및 기간 등 근거 마련 조례 제정 필요

○ **본 방침 적용시기 : 2021.4월 방침 후 협의 분부터**

≪붙임≫ : 1. 전국 시·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고시문 조사 결과 1부.
2. 관련법규 및 자치법규 추진절차 각 1부.